iM라이프 HighFive그랑에이지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약관 이용 GUIDE BOOK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주계약&특약)

- · 주계약(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약(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가나다 順 특약 색인,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O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영상 자료 / 미
2 청약 철회	제29조 (청약의 철회)	영상 자료 / 미소 문
3 계약 취소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영상 자료 / 미유 및
4 계약 무효	제31조(계약의 무효)	영상 자료 / 미
5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영상 자료 / 미소 또
6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해당사항없음	영상 자료 / 미 / 사
7 보험료 납입 연체 및 해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영상 자료 / 미
8 부활 (효력회복)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영상 자료 / 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 해약환급금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46조(해약환급금)	영상 자료 / 미 : 1
10 보험계약대출	제48조 (보험계약대출)	영상 자료 / 미 : 1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제외)할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에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 으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17			
2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특약 색인 (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에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 약관에서 인용한	0		→ 약관 요약서 P5
3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에 부가된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용어 해설 P1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 관련법규 P17	2		➡ <u>핵심 체크항목</u> P3
4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용어 해결 P16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2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 관련법규 P17	3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u>특약 색인</u> P4
5 보험금 지급절차, 본사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과련법규 P17	4		➡ <u>용어 해설</u> P16
(6)	5		⇒ <u>QR코드</u> P2
	6		➡ <u>관련법규</u> PI7
약관조항 등이 음영ㆍ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7		

6.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imlifeins.co.kr), 고객 콜센터(1588-4770)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특약색인

■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P. 제도성-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P. 제도성-3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iM라이프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 보험상품의 종목: 변액연금보험

1. 상품의 주요 특징

• 펀드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동안 연단리 5% 최저보증(단,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 이용시 연금액 감소)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1. 적립형의 경우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5%
- (2) 20년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 4% (단,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보다 짧을 경우 (1)에 따라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 적용)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10년납

-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 5% (2) 20년이후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 4%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7%

40세 가입, 55세 연금개시, 10년납

-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 5% (2) 20년이후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 4%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4.07%

2. 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작은 기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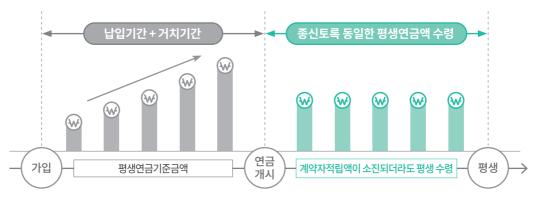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 5%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0%

40세 가입, 55세 연금개시, 일시납

-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 5%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80%



※ 평생연금기준금액에 따라 평생연금액은 변동되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해약환급금 보증과는 무관합니다.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 ① 변액연금보험: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로 운용한 후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운용성과가 좋은 경우 보다 많은 보험금을 기대 할 수 있고, 운용성과가 저조하더라도 보험 고유의 본질인 '보장'을 받도록 사망시 일정수준의 금액을 보증하는 '최저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 **② 무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펀드와 다름]



실적배당형

[원금손실가능]

수익률 당시 변동

예금자보호

[최저보증]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만 보호 (1인당최고 5천만원)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면책기간

해당 없음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없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급부명칭	면책기간
해당없음		

감액지급

감액지급

해당 없음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구분	급부명칭	감액기간 및 비율
	해당없음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구분	급부명칭	보장한도
주계약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 : 최초 1회에 한함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적음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 된 보험료 및 보증비용 등을 차감하여 지급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저축성보험





- ①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이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2 변액보험



즈이

- ① 이 보험은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하고 펀드(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 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특약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 이 펀드(특별계정)로 투입 · 운용되며, 펀드(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계약자적립 액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目 민원 사례

A씨는 투자에 대한 고민 중 모집인 B씨를 통해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한지 5년이 지난 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됨을 안내

예금자보호

치저보증 보험금만 보호 (1인당 친구 5천만원)

(3)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 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 당 "5천만원까지" 입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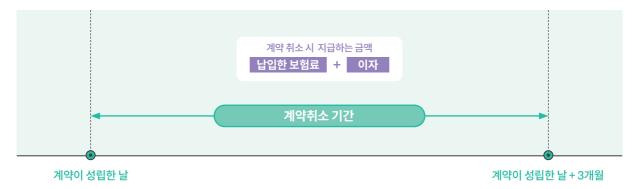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보험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前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 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目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 법률 지식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 기간: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 납입연체 : ①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이거나 ② 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6.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안내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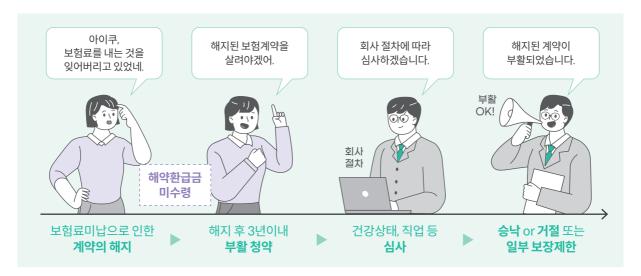


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에릭된답금	대출원금	이자	계	결구성적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 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장 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청구서
입원	\triangle	•				신분증
수술	\triangle		•			
실손	Δ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민원사례 1. 변액보험상품 투자 손실 관련

35세 남자인 A고객은 최근 저금리에 대한 불안 등 투자에 대한 고민 중 지인의 소개로 B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됨. B설계사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변액보험 가입을 제안 받았고,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후 가입함.

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고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경과하여 우연히 청약관련 중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보험상품이었고 원금도 보장이 안 되는 상품임을 확인함.

가입 당시 투자상품으로 권유 받았으며 보험이라는 설명도 없어 설계사를 신뢰하고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과장되게 설명되어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민원사례 2. 사업비 관련

30대 중반 남자인 A고객은 최근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투자처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설계사로 일하던 지인 B씨를 만나 상담을 받게됨.

상담 및 보장, 재무설계 등을 거친 이후 설계사는 고객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고객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함. 이후 관련서류는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고객은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1년간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던 중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보험상품의 사업비에 대하여 알게 된 A고객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듣지 못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함.

※ 유의사항 사업비는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납입보험료에는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으로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 · 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 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 · 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

- 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조(등록)

-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7. 발행소의 소재지
 -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상태표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 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 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 제1호의4 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 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경우

-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 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4)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삭제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 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2)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약관은

계약자 여러분께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ᆺ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주계약 - 1
	제1조(목적) ·····	주계약 - 1
	제2조(용어의 정의)	주계약 - 1
ᄌ	2관 보험금의 지급	주계약 - 7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주계약 - 7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 - 8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주계약 - 9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주계약 - 9
	제7조(보험금의 청구)	주계약 - 9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주계약 - 9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주계약 - 10
	제10조(주소변경 통지)	주계약 - 11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주계약 - 11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주계약 - 11
ᄌ	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1
	제13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주계약 - 11
	제14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주계약 - 11
	제15조(펀드의 유형)	주계약 - 12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주계약 - 12
	제17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주계약 - 13
	제1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주계약 - 13
	제1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주계약 - 13
	제2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4
	제21조(계약자 수시 공지에 관한 사항)	주계약 - 14
	제22조(자산운용보고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주계약 - 14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주계약 - 14
	제24조(기타사항)	주계약 - 14
ᄌ	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주계약 - 15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주계약 - 15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주계약 - 15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주계약 - 16
ᄌ	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주계약 - 16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주계약 - 16
	제29조(청약의 철회)	주계약 - 17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주계약 - 18
제31조(계약의 무효)	주계약 - 19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주계약 - 19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	주계약 - 21
제34조(보험나이)·····	주계약 - 22
제35조(계약의 소멸)	주계약 - 22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주계약 - 23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주계약 - 23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주계약 - 24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주계약 - 24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주계약 - 25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주계약 - 26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주계약 - 26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주계약 - 27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금금 등	주계약 - 28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주계약 - 28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주계약 - 28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주계약 - 28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주계약 - 29
제46조(해약환급금) ·····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주계약 - 29
제48조(보험계약대출)	주계약 - 31
제49조(배당금의 지급)	주계약 - 31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주계약 - 31
제50조(분쟁의 조정)	주계약 - 31
제51조(관할법원) ·····	주계약 - 32
제52조(소멸시효)	주계약 - 32
제53조(약관의 해석)	주계약 - 32
제5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주계약 - 32
제5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주계약 - 32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주계약 - 33
제57조(개인정보보호)	주계약 - 33
제58조(준거법)	주계약 - 33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주계약 - 33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주계약 - 34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계약 - 38
(별표2) 장해분류표	주계약 - 39
(별표3) 재해분류표	주계약 - 61

□ 특별약관

1. X	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	레도성 -	1
2. =	付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레도성 -	3

□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504 약관

* 이 계약의 관련 규정은 약관요약서 내 보험계약관련 법 •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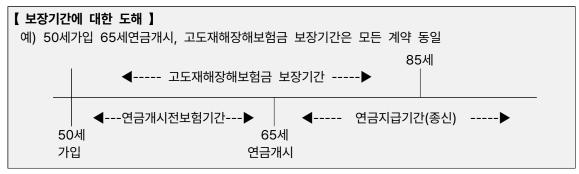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② 이 계약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 보장계약: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7.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평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1.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2. 재해: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이자 계산법 예시 】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지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계약자적립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5.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 거치형의 경우, 장래의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7.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평생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적용되는 이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연단리 기준)
 - 가. 적립형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4/10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보다 짧을 경우 (1)에 따라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100 적용)

나. 거치형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 5/100

【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

가. 적립형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10년납

-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4/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7%

나. 거치형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5/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0%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3. 계약해당일: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매년 도래하는 계약일과 '월'과 '일'이 동일한 날짜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4. 월계약해당일: 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매달 도래하는 계약일과 '일'이 동일한 날짜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5.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연계약해당일/월계약해당일 】

예시1) 보험계약일이 2024년 2월 28일인 경우 2025년의 연계약해당일은 2월 28일 예시2) 보험계약일이 2024년 10월 31일인 경우 2024년 11월의 월계약해당일은 11월30일

⑤ 보험료 관련 용어

- 1. 기본보험료
 - 가. 적립형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거치형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정한 일시납보험료로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가. 적립형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매회 납입할 때 최저한도는 1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x 가입 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 험료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액(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월납 기본보험료 50만원, 선납보험료(3개월) 15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30만원 가정시

- 가입 후 경과월수 10개월(10회 납입) 시점의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50만원 × 10개월 + 150만원) × 200% 100만원 + 30만원
- = 1,230만원

나. 거치형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1년"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할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로 합니다.

-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적립형에 한하여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4. "장기유지보너스"라 함은 적립형의 5년이상 유지된 장기계약(5년납 제외)에 한하여 61회차 기본보험 료를 납입할 때부터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기본보험료의 1.0%를 추가납입보 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가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되는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한 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각 펀드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각 펀드의 좌수가 증가합니다. 다만, 제2호의 "추가납입보험료" 및 제6호의 "기준추가납입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기준 기본보험료"라 함은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6.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7.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함은 납입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 및 보장계약 순보험료(거치형에 한함)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⑥ 변액보험 관련 용어

-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2. "일반계정"이라 함은 제3호의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변액보험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 정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결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보험 업법」 제108조 참고)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 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 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4. "펀드"라 함은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5. "월공제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립형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1) 납입기간 중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보험계약일 포함)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중 유지관련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할 때공제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 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납입기간 이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 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85세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관리비용(연금개시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되면, 이후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나. 거치형

해당 월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적립 액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 포함)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최저사망적립액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6. "위험보험료"라 함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7. "계약체결비용"이라 함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8. "계약관리비용"이라 함은 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9.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평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단리 기준)을 말합니다.
 - (2)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이라 함은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을 말합니다.
 - (3) (1)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 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4)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 도에 인출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평생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에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 "평생연금"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에 평생연금 지급률 및 (1+장기유지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2종(초기집중강화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제11호의 평생연금 지급률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11. "평생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가. 적립형

(1) 1종(기본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2%	3.0%
55세 이상 60세 미만	3.7%	3.5%
60세 이상 65세 미만	4.2%	4.0%
65세 이상 70세 미만	4.5%	4.3%
70세 이상 80세 미만	5.0%	4.8%
80세 이상	5.4%	5.4%

(2) 2종(초기집중강화형)

		피보	험자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개시후	75세까지	연금개시후	76세부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3.90%	3.70%	1.95%	1.85%
55세 이상 60세 미만	4.40%	4.20%	2.20%	2.10%
60세 이상 65세 미만	5.00%	4.80%	2.50%	2.40%
65세 이상 70세 미만	5.40%	5.20%	2.70%	2.60%
70세	6.00%	5.80%	3.00%	2.90%

나. 거치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50%	3.35%
55세 이상 60세 미만	3.75%	3.60%
60세 이상 65세 미만	4.00%	3.80%
65세 이상 70세 미만	4.25%	4.00%
70세 이상 75세 미만	4.50%	4.25%
75세 이상 80세 미만	4.75%	4.50%
80세 이상 85세 미만	5.25%	5.00%
85세 이상	6.00%	5.50%

12. "장기유지 가산율"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장기유지 가산율은 적립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장기유지 가산율
20년 미만	0%
20년 이상 30년 미만	10%
30년 이상 40년 미만	20%
40년 이상	30%

- 13.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제9호에서 정한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다만,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제9호에서 정한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이 금액이 '0'보다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14. "평생연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평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5.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최저사망적립 액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16. 특별계정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1)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2)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3)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4)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고도재해장해보험금(최초 1회에 한함)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평생연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이 계약에서 장해는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인에 의한 장해에 한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가중된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이미 판정되었다고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판정받은 장해지급률을 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고도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경우 평생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고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 (心神喪失) 】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설명】

"지체 없이"라 함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평생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한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고도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 보험사업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 전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면, 그와 같이 이행된 범위에서는 다른 사람은 의무를 면하게 됨)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13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 ① 적립형의 경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 월공제액,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평생연금액(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거치형의 경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에서 월공제액,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 및 평생연금액(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제14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 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완전히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15조(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Ⅲ

국내·외 주식, 상품, REITS,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50%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 채권형 수익증권(ETF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기타 사모집합투자증권 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국내·외 주식 투자는 국내 및 국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등에 주로 투자하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헤지 전략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2. AI글로벌멀티에셋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주식, 상품, REITS,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기구(ETF포함)에 순자산의 5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채권관련 수익증권(ETF포함)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 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15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 로 설정해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 변경을 각각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제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①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의 적립비율의 변경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의 0.1%와 2,000원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5항에서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7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펀드자동재 배분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 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제1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액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1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1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 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0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 등과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자 수시 공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으로 정하는 부실자 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5. 그 밖에 계약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사항

제22조(자산운용보고서 교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23조(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원본액 】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 자적립액과 함께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24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승낙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반대증거 】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 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제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금 삭감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 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9조(청약의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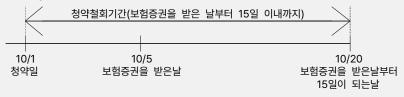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 청약의 철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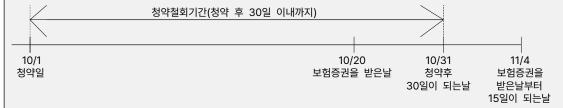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 예시 】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예시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보험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계약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연금지급개시나이
 - 3. 연금지급형태
 - 4. 계약자
 -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기본보험료의 감액 비율만큼 해약환급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감액 전 (또는 최초가입시)	감액 후
기본보험료	1,000만원	500만원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400만원 - 200만원)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 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기준 기본보험료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x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x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주) "감액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 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 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감액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 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감액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취) "감액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감액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은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7조(계약 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①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개시나이를 변경신청 하는 시점에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누계액(추가납입보험료 제 외, 선납보험료 포함)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하여 연금 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연도 기준 년1회에 한함).
- ③ 적립형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보험료 납입기간(제42조(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 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 도래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50세 이후)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 ① 거치형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 으로 계산된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 ◎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형과 초기집중강화형을 복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①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⑩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

① 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라 함은 적립형의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노후긴급자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과 아래의 최저노후긴급자금 보증금액 중 큰 금액에 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최저노후긴급자금 보증금액
15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5%
15년 이상 20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5%
25년 이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0%

- ②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노후긴급자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아래와 같이 재계산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을 재산출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지급 이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 = 노후긴급자금 지급 직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 × (1-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

• 노후긴급자금 지급 이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 노후긴급자금 지급 직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 (1-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
- ③ 노후긴급자금의 신청비율은 최소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노후긴급자금 신청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노후긴급자금 지급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하여 노후긴급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노후긴 급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후긴급자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한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평생연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5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5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 1995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 기재 사실을 근거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거 치형의 경우 해당 금액에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④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

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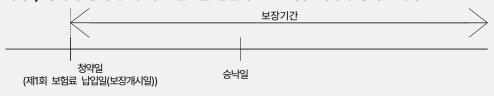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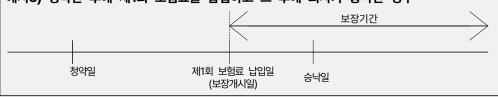
예시1) 청약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적립형의 경우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거치형의 경우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1년"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적립형에서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2항 또는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항에 따른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 보험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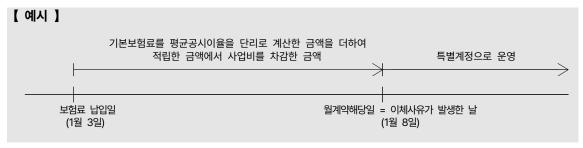
제3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회 기본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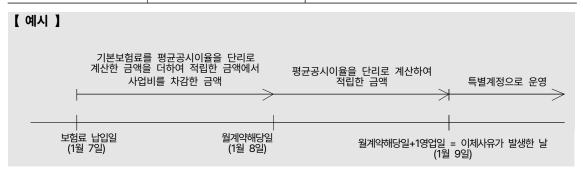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승낙된 경우	승낙일	물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하고, 그 이후는 특별계정의 투 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 여 펀드별 편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 적용)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제2영 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 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에 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제1영업 일"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월계약해당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금액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납입일+제2영업일"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단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적립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2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 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29조(청약의 철회)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 자가 다른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 공제되지 못한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제2영업일"
 - 2.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 2영업일"
- 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3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 담보권실행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 를 변제받는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납입기간의 1/2경과시점(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년 경과시점)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일은 연기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되며, 이 경우 연기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평생연금지급률 및 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연장된 연금 지급개시시점이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연금 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항 제5호에서 정한 "월공제액"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간 및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1.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평생연금 보증 비용의 합계액
 - 2.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평생연금 보증비용의 합 계액.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에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중 유지 관련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만 공제합니다.
- ④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할 때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총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합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그 연체기간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에 포함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의 계약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충당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의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예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납입을시중지기간은 종료됩니다.
- ①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제3항에서 정한 월공제액이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 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제척기간"이라 함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4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6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①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 출할 당시 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승낙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내에서 전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주계약의 연간 기본보험료와 3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②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승낙일 +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 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승낙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내에서 전부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2.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③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 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 인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3호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인출당시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 인출당시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 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기준 기본보험료
 - =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x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인출 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주) "인출 직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인출 직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 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항 제9호에서 정하는 평생연금기준금 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인출 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x

인출 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액

(취) "인출 직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인출 직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① 계약자적립액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의 월공제액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 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연도 】

해당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당일이 7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당해연도 7월 15일부터 차년도 7월 14일까지 를 말합니다.

제48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년"시점까지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가운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시점까지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고도재해장해보 험금 및 평생연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보험의 적용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등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소멸시효)

-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예를 들면, 2025년 1월 1일에 보험사고 발생시 2028년 1월 1일까지)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민법」제2조제1항)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제55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사회통념상 매우 불합리하게 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제57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5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액 및 평생연금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적립형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제3조 제1호)

(기준 : 1구좌)

지급사유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금액	1,000만원

2. 평생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연금 지급률 및 (1+장기유지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

* 평생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종(기본형)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2%	3.0%
55세 이상 60세 미만	3.7%	3.5%
60세 이상 65세 미만	4.2%	4.0%
65세 이상 70세 미만	4.5%	4.3%
70세 이상 80세 미만	5.0%	4.8%
80세 이상	5.4%	5.4%

2종(초기집중강화형)

	피보험자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개시후 75세까지		연금개시후	76세부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3.90%	3.70%	1.95%	1.85%
55세 이상 60세 미만	4.40%	4.20%	2.20%	2.10%
60세 이상 65세 미만	5.00%	4.80%	2.50%	2.40%
65세 이상 70세 미만	5.40%	5.20%	2.70%	2.60%
70세	6.00%	5.80%	3.00%	2.90%

* 장기유지가산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장기유지 가산율	
20년 미만	0%	
20년 이상 30년 미만	10%	
30년 이상 40년 미만	20%	
 40년 이상	30%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 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3. 계약자적립액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4. 평생연금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에 평생연금 지급률 및 (1+장기유지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종(초기집중강화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평생연금 지급률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5.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평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생연 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단리 기준)을 말합니다.
 - (2)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4/100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보다 짧을 경우 1)에 따라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5/100 적용)

【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10년납

- 연단리 기준 : 1) 보험계약일부터 20년까지의 기간: 5/100
 - 2) 20년이후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4/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7%
- (3)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 (4) (1)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 도에 인출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47조(계약자적 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평생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에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제33조(노후긴급자금 신청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7. 평생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거치형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사유	8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10%

2. 평생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 액

* 평생연금 지급률은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0세 이상 55세 미만	3.50%	3.35%
55세 이상 60세 미만	3.75%	3.60%
60세 이상 65세 미만	4.00%	3.80%
65세 이상 70세 미만	4.25%	4.00%
70세 이상 75세 미만	4.50%	4.25%
75세 이상 80세 미만	4.75%	4.50%
80세 이상 85세 미만	5.25%	5.00%
 85세 이상	6.00%	5.50%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의한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에 보장계약 계약자적립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 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3. 계약자적립액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4. 평생연금이라 함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에 평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평생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액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평생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매년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동안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단리 기준)을 말합니다.
 - (2)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에 따른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단리 기준)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 : 5/100

【 평생연금기준금액이율의 복리 이자율 환산 예시 】

예시) 40세 가입, 65세 연금개시, 일시납

- 연단리 기준 : 보험계약일부터 65세 계약해당일까지: 5/100
 - ⇒ 연복리 기준으로 환산시 3.30%
- (3) 평생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30년의 기간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중 작은 기간을 말합니다.
- (4) (1)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의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5)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 도에 인출한 경우 평생연금기준금액은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평생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에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7. 평생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33조 제4항 및 제46조 제4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고도재해장해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및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			
(제35조 제2항)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TI TI LI C TI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이	7.1010
	지급사유가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공시이율
ᆏᄱᆏᄀ	발생한 날의	없게 된 날) 이내	
평생연금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제3조 제2호)	청구일까지의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이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기간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없게 된 날) 이후	
	청구일의 다음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제46조 제1항)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및			
노후긴급자금	청구일의 다음	남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제33조)			

- 주) 1. 평생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위의 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말하며, 공시이율이 해당기 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장 해 분 류 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 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Hand Movement)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Finger Counting)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 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

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 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20 12
소선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 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 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입벌리기)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 (입벌리기)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 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 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 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 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 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 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 (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범위 내에 두 개 이상 척

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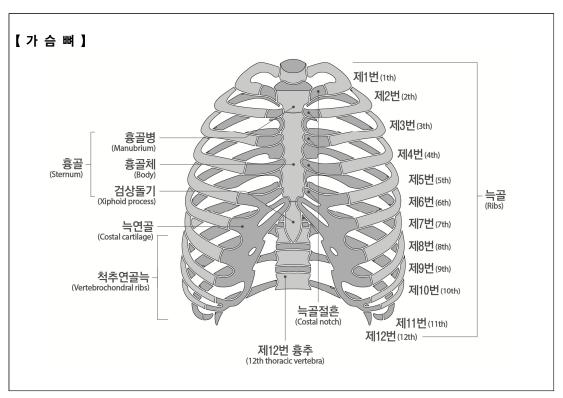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 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부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 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 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 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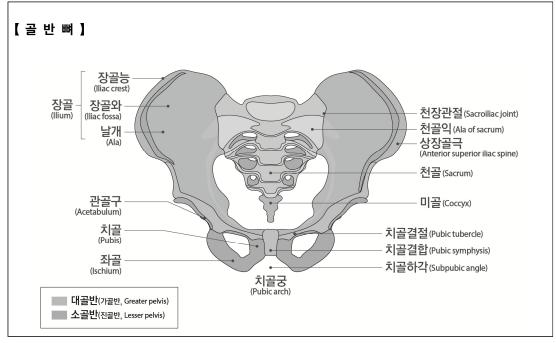
7.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	15
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 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 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 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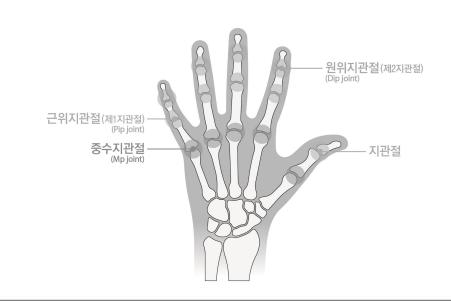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5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 가 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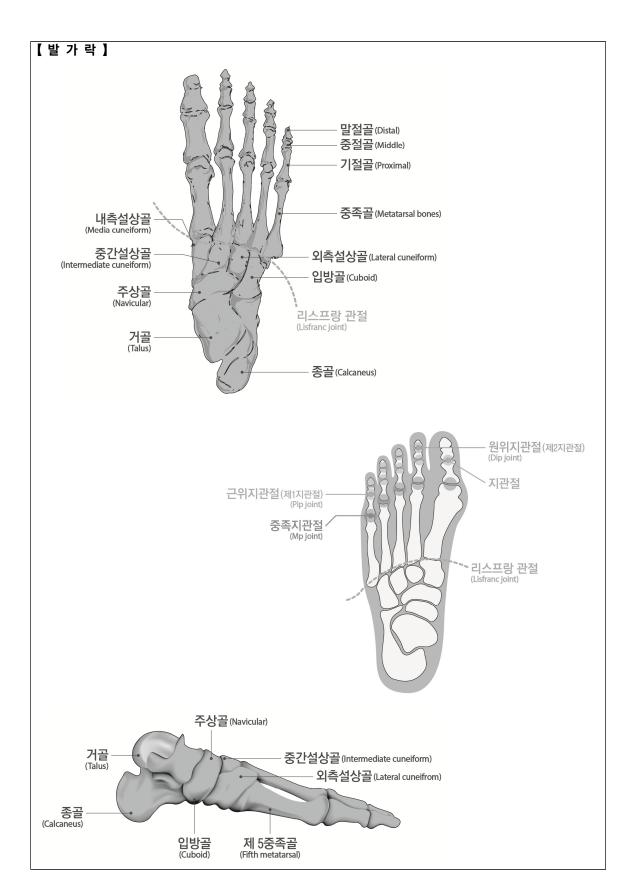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3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 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 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 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⑦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④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④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④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 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 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 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림)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 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 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 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재 해 분 류 표

1. 재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설명】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사고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사고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봅니다.

- * 재해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으로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위 "1. 재해의 정의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도 성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보험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기간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 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7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게 도 성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보험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이하 "보험계약자"를 "계약자"라 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나. 재해: (별표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 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또는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을 2인(3인,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주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⑥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1. 제3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 2. 제3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3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 ①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특정 신체부위 보장제한부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하며, 2종(특정 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형)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별표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 신체부위" 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2.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 이라 합니다)
-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사정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사정기준 】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재해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제4항 제4호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4항 제4호에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 합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① 제4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⑩ 제2항의 특정 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6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은 각각 4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분류번호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직장
4	항문
5	간
6	담낭(쓸개) 및 담관
7	췌장
8	비장
9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포함)
10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1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2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3	귀[외이(바깥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14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5	신장
16	부신
17	요관, 방광 및 요도
18	음경
19	질 및 외음부
20	전립선
21	유방(유선 포함)
22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3	난소 및 난관
24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5	갑상선
26	부갑상선
27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8	용추부(해당신경 포함)
29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0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1	인쪽 어깨 으로ᄍ 어깨
32	오른쪽 어깨 왼쪽 고관절
33	선국 보선물

분류번호	특정 신체부위의 명칭
34	오른쪽 고관절
35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6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37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38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39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4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41	식도
42	대장(맹장, 직장 제외)
43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44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5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51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별표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번호	병 명	질병분류번호	세부내용
1	심질환	100~102, 105~109, 120~125, 126~128, 130~152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2	뇌혈관질환	160~169	뇌혈관질환
3	당뇨병	E10~E14	당뇨병
4	고혈압질환	l10∼l13, l15	고혈압성 질환
5	결 핵	A15~A19, B90	결핵 결핵의 휴유증
6	담석증	K80	담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7	요로결석증	N21	하부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0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0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8	임신중독증	0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014	전자간
	O15	자간	
		M05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9	골관절증 및	M15	다발관절증
	류마티스관절염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10	척주만곡증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112 10	M41	척주측만증
11	통풍	E79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장애
	11 등 중도	M10	통풍

분류번호	병 명	질병분류번호	세부내용
12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H49	마비성 사시
13	사시	H50	기타 사시
		H51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H25	노년백내장
14	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취기권매근	1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15	하지정맥류 (정맥염 포함)	I83	하지의 정맥류
	(경력급 포함)	187	정맥의 기타 장애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10	탈장	K43	복벽탈장
16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 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N96	습관적 유산자
		000	자궁외임신
		001	포상기태
		0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003	자연유산
17	유산	004	의학적 유산
		005	기타 유산
		006	상세불명의 유산
		0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800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020	초기임신중 출혈
		K65	복막염
18	복막의 질환	K66	복막의 기타장애
		K67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서의 복막의 장애
	골반염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19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3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 장애

분류번호	병명	질병분류번호	세부내용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20	20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21 천식	J45	천식	
	신식	J46	천식지속상태

주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설명】

피보험자에게 진단확정된 질병이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진단확정일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보험자에게 진단확정된 질병이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진단확정일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주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

장 해 분 류 표

주계약 약관 별표2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재 해 분 류 표

주계약 약관 별표3 "재해분류표"와 동일

상담 및 문의전화 1588-4770

www.imlifeins.co.kr

